

2025

경비지도사, 청원경찰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엠북 자격증

공부혁명!
mbook.kr

- ★ 90분 완성, 고득점 가능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종합
- ★ 기출 문제 지문 수록
- ★ 최근 법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암기코드 제공

도서명 :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ISBN : 979-11-94286-10-3

발간일 : 2025-02-03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hanmail.net

정가 : 19,000원



[목차]

제1권 경비업법(p3)

제2권 청원경찰법(p127~191)

제1권 경비업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6)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p11)

제3장 기계경비업무(p31)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p33)

제1절 경비지도사(p34)

제2절 경비원(p55)

제3절 특수경비원(p73)

제4절 교육기관(p90)

제5장 행정처분 등(p99)

제6장 경비협회(p108)

제7장 보칙(p111)

제8장 벌칙(p117)

[약어]

- 대상시설은 경비대상시설(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 청장은 경찰청장
- 시도청장은 시도경찰청장
- 서장은 경찰서장

- 관서장은 (관할)경찰관서장
- 지도사는 경비지도사
- 업자는 경비업자

[비고]

- 검은색은 법
- 보라색은 시행령
- 갈색은 시행규칙
- 초록색은 최근 개정 내용
-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 연두색 형광펜은 시행 예정
- 하늘색은 2023년, 2024년 경비지도사 출제

문제

- 붉은색은 2023년, 2024년 경비지도사 중복 출제 문제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3조

1. 목적

- 경비업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
-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

2. 정의

가. 경비업무 (시호신기/혼/특)

1) 시설경비는 대상시설 도난, 화재, 혼잡 위험 방지

2) 호송경비는 운반중인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도난/화재 위험 방지

3) 신변보호는 생명/신체 위해 방지, 신변 보호

4) 기계경비는 대상시설 기기로 감지/송신한 정보를,

- 이외 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해,

- 도난/화재 등 위험 방지

5) 혼잡/교통유도경비(신설, 2025년 1월 31일 시행)

- 도로 접속 공사현장과 사람/차량 통행에 위험한 장소나 도로 점유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혼잡 등 위험 방지

6) 특수경비는

- 공항/항공기, 항만, 원자력발전소 중
- 국정원장 지정 국가보안목표시설과
- 국방장관 지정 국가중요시설 경비, 도난/화재 등 위험 방지

나. 경비업은 경비업무 전부/일부 도급

다. 경비지도사

-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라. 경비업자

- 경비업 허가 받은 법인

마. 경비원은 업자가 채용한 고용인

- 1)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혼잡/교통유도경비
- 2)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무

바. 무기는 인명/신체에 위해 가할 권총, 소총 등

사. 집단민원현장

- 노동쟁의 조정신청 또는 쟁의행위 발생
- 정비사업 이해대립
- 특정 시설물 설치 민원
- 주주총회 이해대립
- 부동산/동산 법적 권리 이해대립
- 100명 이상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 대집행 장소

아. 기타

- 시설주는 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
- 관할경찰관서장은 관할 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책임자

- 관리책임자는 시설주가 무기관리를 위해
지정한 자

3. 법인

- 경비업은 법인만 영위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4~7조

1. 경비업의 허가

가. 허가/변경허가

1) 법인(업자)는

가) 경비업무를 특정해 주사무소 시도청장
허가받음

- 업무변경시도 같다

나) 시도청장이나 서장에 **정관, 임원 이력서를
첨부한 신청서 제출**

- 서장은 지체없이 시도청장에 송부

다) 허가/변경허가 신청시 자본금을 제외한
인력, 시설, 장비 미비한 때

- 확보계획서 제출 후 허가 1월내

구비(시도청장이 확인)

(참고) 각종 신청서, 신고서, 보고서, 기록부
등은 전자문서 포함

2) 시도청장은

- 임원중 결격자 유무, 인력/시설/장비
확보/가능성 여부, 자본금, 대표/임원
경력/신용을 검토해 결정

- 허가/갱신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허가/변경허가한 때 법인 주사무소 관할
서장 거쳐 허가증 발급

3) 허가증 재발급

- 분실시 사유서, 못쓰게된 때 그 허가증을 첨부해 주사무소 관할 시도청장이나 서장에 재교부 신청

나. 경비업의 요건

1) 인력

가) 지도사 1명(공통)

나) 경비원

- 시설경비는 10명
- 호송경비/신변보호는 유단자 5명
- 기계경비는 전자통신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

포함 10명

- 특수경비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2) 자본금 1억, 특수경비는 3억 이상

3) 시설/장비

가) 교육장(공통)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 동시 교육 가능

나) 공통장비(복/경/단/분)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 단, 신변보호업무는 복장 불요, 무전기 등

통신장비 필요

다) 호송경비

- 호송 차량 1대, 현금호송백 1개 이상

라) 기계경비

- 관제시설
- 감지, 송수신 장치
-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

(비고)

1) 자본금

- 하나의 업무에 대한 자본금 갖춘 업자가 그

외 업무 추가시 자본금 갖춘 것으로 봄

- 단,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

추가시 갖춘 자본금 포함해 특수경비 자본금

기준에 적합해야 함

2) 교육장

- 하나의 업무에 대한 시설 갖춘 업자가 그

외 업무 추가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업무용 교육장 구비 요

3) 유단자

-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나 문화관광부 등록

무도 단체가 인정한 자

4) 현금 등 귀중품 운반

- 호송용 차량은 견고성/안전성, 무선통신/경보 시설 구비
- 현금호송백은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 구비

다. 신고

- 업자는 다음 경우 **시도청장에 신고**

1) 휴폐업: 7일내 신고

- 주사무소 시도청장이나 서장에 신고서 제출
- 서장은 지체없이 시도청장에 송부
- 폐업시 허가증 첨부
- 영업재개 또는 휴업기간종료 7일내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 제출

2) 다음은 사유발생 30일내 신고

- 법인 명칭, 대표자/임원 변경
- 법인 주사무소/출장소, (특수경비가 아니라)

기계경비 관제시설 신설, 이전, 폐지

- (기계경비업무가 아니라)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 정관 (시행일이 아니라) 목적 변경

3) 신설/이전/폐지 신고 대상 출장소

-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 지사, 사업소

2. 허가의 제한

가. 누구든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동일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 받지못함

나. 경비원이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에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1)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취소 10년

미경과시 누구든 허가가 취소된 업체와 동일 명칭으로 허가 받지못함

2)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이나 임원 변경해도 허가 취소 5년 미경과시 경비업